이용 . 해지에 관한 사항

제69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센터의 이용정원은 43명이다.

②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공단을 통한 모집
2.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모집
3.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한 홍보

③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자 중 시설급여 인정 대상자로 한다.

④ 이용신청자는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본 센터의 이용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한다.

제70조(운영시간) ① 본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며 휴무는(설. 추석. 근로자의날(부분휴무. 주휴일)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무 가능 함)

제71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본원과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등급 갱신 및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이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기명날인한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월 이용료, 기타 부담액 및 납부)

① 본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을 예치할 수 없다.

② 급여항목의 수가는 공단의 고시에 따르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용자는 월 이용료를 매월 20일까지 본 센터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이용자, 보호자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4. 본인에게 제공되는 급여내용에 대해 알 권리
5.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본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해지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74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월 이용료를 계속하여 3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단, 본 센터이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 15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75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물가인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7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2.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3.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4.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5.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
6. 촉탁의사의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②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본 센터는 이용자가 건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신체활동의 제한 또는 이동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와 경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에 관한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는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센터 종사자가 보호자를 대리할 수 있다.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각종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인근병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후송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복귀한다.

③ 이용자의 질환의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79조(사망 시 신원인수) ① 이용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80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때는 이용자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변상에 관한 사항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본 센터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4.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④ 이용자는 본 센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이용인은 센터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81조(장기요양급여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본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본 센터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동료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본 센터의 이용자 대한 배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사에 의해 배상하며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2조(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본 센터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별표 2]

2026년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2026.01.01 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0% or 20% 추가산정
한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1,2등급 월 한도액 10%범위 내 추가 산정
10%추가 20%추가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	3,4,5등급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일반:15%　　40%경감자:9%　　60%경감자:6%　　기초: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용 : 이용일수 x 식대

분류	등급	급여비용	공휴일 50%+	일요일 30%+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15% 이용료 15%	15% 이용료 비급여	15% 이용료 합계	9% 이용료 9%	9% 이용료 비급여	9% 이용료 합계	6% 이용료 6%	6% 이용료 비급여	6% 이용료 합계
3시간 이상	1등급	**41,820**	62,730	54,360	6,270	3,760	2,500	6,270	6,400	12,670	3,760	6,400	10,160	2,500	6,400	8,900
	2등급	**38,720**	58,080	50,330	5,800	3,480	2,320	5,800	6,400	12,200	3,480	6,400	9,880	2,320	6,400	8,720
	3등급	**35,740**	53,610	46,460	5,360	3,210	2,140	5,360	6,400	11,760	3,210	6,400	9,610	2,140	6,400	8,540
	4등급	**34,120**	51,180	44,350	5,110	3,070	2,040	5,110	6,400	11,510	3,070	6,400	9,470	2,040	6,400	8,440
	5등급	**32,490**	48,730	42,230	4,870	2,920	1,940	4,870	6,400	11,270	2,920	6,400	9,320	1,940	6,400	8,340
	인지	**32,490**	48,730	42,230	4,870	2,920	1,940	4,870	6,400	11,270	2,920	6,400	9,320	1,940	6,400	8,340
6시간 이상	1등급	**56,060**	84,090	72,870	8,400	5,040	3,360	8,400	6,400	14,800	5,040	6,400	11,440	3,360	6,400	9,760
	2등급	**51,930**	77,890	67,500	7,780	4,670	3,110	7,780	6,400	14,180	4,670	6,400	11,070	3,110	6,400	9,510
	3등급	**47,940**	71,910	62,320	7,190	4,310	2,870	7,190	6,400	13,590	4,310	6,400	10,710	2,870	6,400	9,270
	4등급	**46,300**	69,450	60,190	6,940	4,160	2,770	6,940	6,400	13,340	4,160	6,400	10,560	2,770	6,400	9,170
	5등급	**44,650**	66,970	58,040	6,690	4,010	2,670	6,690	6,400	13,090	4,010	6,400	10,410	2,670	6,400	9,070
	인지	**44,650**	66,970	58,040	6,690	4,010	2,670	6,690	6,400	13,090	4,010	6,400	10,410	2,670	6,400	9,070
8시간 이상	**1등급**	**69,730**	104,590	90,640	**10,450**	6,270	4,180	**10,450**	6,400	**16,850**	6,270	6,400	**12,670**	4,180	6,400	**10,580**
	2등급	**64,590**	96,880	83,960	**9,680**	5,810	3,870	**9,680**	6,400	**16,080**	5,810	6,400	**12,210**	3,870	6,400	**10,270**
	3등급	**59,640**	89,460	77,530	**8,940**	5,360	3,570	**8,940**	6,400	**15,340**	5,360	6,400	**11,760**	3,570	6,400	**9,970**
	4등급	**58,010**	87,010	75,410	**8,700**	5,220	3,480	**8,700**	6,400	**15,100**	5,220	6,400	**11,620**	3,480	6,400	**9,880**
	5등급	**56,360**	84,540	73,260	**8,450**	5,070	3,380	**8,450**	6,400	**14,850**	5,070	6,400	**11,470**	3,380	6,400	**9,780**
	인지	**56,360**	84,540	73,260	**8,450**	5,070	3,380	**8,450**	6,400	**14,850**	5,070	6,400	**11,470**	3,380	6,400	**9,78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30	99,860	11,520	6,910	4,600	11,520	6,400	17,920	6,910	6,400	13,310	4,600	6,400	11,000
	2등급	**71,160**	106,740	92,500	10,670	6,400	4,260	10,670	6,400	17,070	6,400	6,400	12,800	4,260	6,400	10,660
	3등급	**65,750**	98,620	85,470	9,860	5,910	3,940	9,860	6,400	16,260	5,910	6,400	12,310	3,940	6,400	10,340
	4등급	**64,090**	96,130	83,310	9,610	5,760	3,840	9,610	6,400	16,010	5,760	6,400	12,160	3,840	6,400	10,240
	5등급	**62,460**	93,690	81,190	9,360	5,620	3,740	9,360	6,400	15,760	5,620	6,400	12,020	3,740	6,400	10,140
	인지	**56,360**	84,540	73,260	8,450	5,070	3,380	8,450	6,400	14,850	5,070	6,400	11,470	3,380	6,400	9,780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50	107,080	12,350	7,410	4,940	12,350	6,400	18,750	7,410	6,400	13,810	4,940	6,400	11,340
	2등급	**76,310**	114,460	99,200	11,440	6,860	4,570	11,440	6,400	17,840	6,860	6,400	13,260	4,570	6,400	10,970
	3등급	**70,500**	105,750	91,650	10,570	6,340	4,230	10,570	6,400	16,970	6,340	6,400	12,740	4,230	6,400	10,630
	4등급	**68,860**	103,290	89,510	10,320	6,190	4,130	10,320	6,400	16,720	6,190	6,400	12,590	4,130	6,400	10,530
	5등급	**67,240**	100,860	87,410	10,080	6,050	4,030	10,080	6,400	16,480	6,050	6,400	12,450	4,030	6,400	10,430
	인지	**56,360**	84,540	73,260	8,450	5,070	3,380	8,450	6,400	14,850	5,070	6,400	11,470	3,380	6,400	9,780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18시~22시 : 20% 가산　　○ 공휴일 : 30% 가산

비급여비용(점심/저녁)

식대	간식	합계
5,400	1,000	**6,400**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01 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0% or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 ·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1,2등급 월 한도액 10%범위 내 추가 산정 3,4,5등급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10%추가 20%추가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등급	급여비용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15%	9%	6%
60분이상	25,320	20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이상	34,120	20	682,400	102,360	61,410	40,940
90분이상	34,120	31	1,057,720	158,650	95,190	63,460
120분이상	43,430	25	1,085,750	162,860	97,710	65,140
150분이상	50,640	25	1,266,000	189,900	113,940	75,960
180분이상	57,020	25	1,425,500	213,820	128,290	85,530
210분이상	63,530	25	1,588,250	238,230	142,940	95,290
240분이상	70,080	25	1,752,000	262,800	157,680	105,120

가족요양60분(20일) 가족요양90분(31일)

분류	20일	30일	31일
급여비용	506,400	1,023,600	1,057,720
본부금(15%)	75,960	153,540	158,650

방문목욕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미이용
급여비용	88,990	80,230	50,100
본부금(15%)	13,340	12,030	7,510

방문요양 급여비용2 (방문당)

분류	등급	급여 비용	공휴일 50%+	일요일 30%+	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월한도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남는비용	15%	9%	6%
1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2,512,900	31	1,346,330	1,166,5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2,512,900	31	1,569,840	943,060	235,470	141,280	94,19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2,512,900	31	1,767,620	745,280	265,140	159,080	106,0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2,512,900	31	1,969,430	543,4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2,512,900	31	2,172,480	340,420	325,870	195,520	130,340
2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2,331,200	31	1,346,330	984,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2,331,200	31	1,569,840	761,360	235,470	141,280	94,19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2,331,200	31	1,767,620	563,580	265,140	159,080	106,0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2,331,200	31	1,969,430	361,7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2,331,200	30	2,102,400	228,800	315,360	189,210	126,140
3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528,200	31	1,346,330	181,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528,200	30	1,519,200	9,000	227,880	136,720	91,15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528,200	26	1,482,520	45,680	222,370	133,420	88,9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1,528,200	24	1,524,720	3,480	228,700	137,220	91,48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1,528,200	21	1,471,680	56,520	220,750	132,450	88,300
4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409,700	31	1,346,330	63,3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409,700	27	1,367,280	42,420	205,090	123,050	82,03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409,700	24	1,368,480	41,220	205,270	123,160	82,10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1,409,700	22	1,397,660	12,040	209,640	125,780	83,85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1,409,700	20	1,401,600	8,100	210,240	126,140	84,090
5등급	90분이상	34,120	51,180	44,350	1,068,500	31	1,057,720	10,780	158,650	95,190	63,460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208,900	27	1,172,610	36,290	175,890	105,530	70,35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208,900	23	1,164,720	44,180	174,700	104,820	69,88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208,900	21	1,197,420	11,480	179,610	107,760	71,840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 22시~06시 :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

○ 일요일 : 30% 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50% 가산

■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table>
<tr><td rowspan="4">이용자
(갑)</td><td>성 명</td><td></td><td colspan="2">장기요양등급
(인증번호)</td><td>등 급</td></tr>
<tr><td>생년월일</td><td></td><td colspan="2">연락처(자택)</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기 타</td><td colspan="4">[ ] 일반 [ ] 50%경감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td></tr>
<tr><td rowspan="3">제공자
(을)</td><td>시설명</td><td></td><td>시설종류</td><td colspan="2"></td></tr>
<tr><td>시설장</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1</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td><td>성 명</td><td></td><td colspan="2">관 계</td><td>‘갑’의 ( )</td></tr>
<tr><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자택</td><td></td></tr>
<tr><td>이동전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able>

제1조【 목 적 】 이 계약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을’과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갑’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을’의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급여이용 시간 】 ①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 의 급여 이용요일 및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 시간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1일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③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급여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갑' 은 다음 각 호의 의무 가 있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단, 3개월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의무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을' 에게 통보의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의 의무 가 있다.

1.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
2. 급여 제공시간에 '갑' 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의무
3. '갑' 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의무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갑' 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의무
6. '갑' 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의무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의무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무
9.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의무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을' 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검진 결과「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을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20일 이상 이용계약을 준수하고 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아니하였을 때**

제6조【 계약의 해지 】 ① '갑' (또는 '병')은 제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은 제5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서면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의 '갑' 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 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7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 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 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 및 납부 】 ① 요양등급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 여	본인부담금(15%)				
비급여	식비(1일 2식)				
	간식비(1일 2회)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급 여	본인부담금(15%)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이용료는 매월 20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 : 농협 351-0908-9596-63 서석재가노인복지센터**

③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급여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급여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9조【 비용의 개정 】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른다.

② 비급여비용의 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고시되지 않은 항목은 '을' 의 결정에 따른다.
③ '을' 은 정부에서 고시한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납부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갑'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계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개인물품 】 ① '갑' 은 시설 이용 시에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 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 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을' 은 '갑' 또는 '병' 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건강관리 】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 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 이 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 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배상 】 ① '갑' 은 '을'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 해야 하며, '갑' 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 은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 의료기관,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급여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 은 즉시 '병' 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사래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동료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19조【 계약자의 대표성 】

① '병' 은 본 계약 및 '갑' 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을' 은 '갑' 에 관한 통보, 협의, 결정 등에 관한 의무는 '병' 에게만 있으며, '병' 을 제외한 가족이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무도 없다.

③ '병' 은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을'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을' 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서명)

‘을’ 시설장 (직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서명)